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6]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형사법의 끝판
왕" 형사법 오상
훈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계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난이도 : 중

출제영역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해설]

정답 : ④

- ① (O) 부동산매매에서 그 대금의 지급은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수인에게 위탁된 매도인의 사무가 아니라 애초부터 매수인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4.28, 2011도3247).
- ② (O) [대물변제계약부동산처분사건] 대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
- ③ (O) <동산 이중양도 사건> 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 ④ (X)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12.13, 2016도19308). ∵ 부동산이 중매의 법리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22.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甲이 2011.5.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乙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저당권에는 추금효과 있으므로 2011.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바 '대포자'로 유통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난이도 : 상

출제영역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해설]

정답 : ②

*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2개이다.

- ④ (O) 대판 2005.11.10, 2005도6604 ∵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님으로

⑤ (X) [대포차유통 권리행사방해사건]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근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바 '대포자'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⑥ (O) 대판 2006.3.23, 2005도4455

⑦ (X)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 · 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20.9.24, 2020도9801).

⑧ (O) 제328조, 제323조

23.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핫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②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방화죄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③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죄를 범하여 자기소유 건조물이 연소한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뿐만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경우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난이도 : 중

출제영역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해설]

정답 : ③

① (O) 대판 1984.7.24, 84도1245

② (O)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③ (X) 제168조 ※ 연소죄 =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 일반물건 방화 → 현주, 공용, 타인소유 일반건조물 · 일반물건 연소

④ (O) 대판 2002.3.26, 2001도6641

2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구청장에서 B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주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난이도 : 중

출제영역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해설]

정답 : ①

① (X) 甲 구청장이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 허위공문서작성 X, 자격모용공문서작성 O

② (O) 피고인들이 甲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乙 대신 甲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乙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乙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 위조의 간접정범 X : 문서의 내용을 알고 서명 · 날인한 경우

③ (O) 대판 1999.5.14, 99도202 ∵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④ (O)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무죄이다(대판 2007.2.23, 2005도7430). ∵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